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84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정일영 · 조인철 · 유동수
강준현 · 최민희 · 안태준
서영석 · 황명선 · 윤후덕
권향엽 · 허영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지방선거에서 주민은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하여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의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원 구성 과정에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며 그와 달리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당적 변경의 신고 및 공개) ①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
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탈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탈당 사유를 지방의회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사무처 또는 사무국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사무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
다.

1. 의원의 성명
2. 소속 지방의회
3. 탈당한 정당
4. 탈당일
5. 탈당 사유

제44조의3(지방의회 원 구성의 투명성) ①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 직위의 선출과 직위 배분을 위한 협

의에 있어 임기 개시 당시 주민의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1항과 달리 대표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무처장등은 이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의2(당적 변경의 신고 및 공개) ①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탈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탈당 사유를 지방의회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사무처 또는 사무국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사무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사무처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u> <u>1. 의원의 성명</u> <u>2. 소속 지방의회</u> <u>3. 탈당한 정당</u> <u>4. 탈당일</u> <u>5. 탈당 사유</u>
<u><신 설></u>	<u>제44조의3(지방의회 원 구성의 투명성) ① 지방의회는 의장 ·</u>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 직위의 선출과 직위
배분을 위한 협의에 있어 임기
개시 당시 주민의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
중하여야 한다.

②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1항과 달리 대표 직위를 배
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민
에게 공개하고 회의록에 기재
하여야 하며, 사무처장등은 이
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
다.